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19 선고 2021가단1128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민오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59,022,9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9,022,9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8. 20. 접수

제703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9,022,9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8. 10. 25. 30,000,000원을, 2018. 12. 10. 44,0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 C은 2020. 9.경 이후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그 무렵 대출금 잔액은 73,961,491원이었다.

나. C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8. 20. 접수 제70310호로 2019. 8. 2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C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9,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0. 2. 18.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62,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졌고 2020. 2. 19. 채무자를 C으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피고와 C은 2020. 9. 1. 협의이혼하였다.

마. 2021. 4. 30.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합계 77,011,536원이다. 바. 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채무면탈을 위해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거가 재산분할인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2019. 8. 20.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8.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채무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피고와 C이 2020. 9. 1.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산 정리 및 협의이혼에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그 실질이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증거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은 118,045,917원(= 175,000,000원 - 56,954,083원)이고, 이를 모두 피고가 분할받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피고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기여도가 50%를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기여도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는 재산분할대상 순재산의 50%에 해당하는 59,022,958원(= 118,045,917원 × 5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피고와 C 사이의 실제 재산분할결과를 보면, 피고가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118,045,917원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므로,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50% 상당 금액 59,022,958원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① 피고와 C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이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보면, 최근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집합건물, 동일한 면적의 호실이 181,000,000원, 170,000,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그 평균값보다 다소 작은 원고 주장금액 175,000,000원을 적극재산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증여 이후 2020. 2. 19. 대출원리금 56,871,123원이 변제되었는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라 할 것이다.

④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C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보이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도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산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피고는 대출을 받아 C에게 6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C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증여받고 대출금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C에게 대출변제금을 초과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증여를 통해 과다한 재산분할을 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59,022,958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과 피고의 돈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 명의로 등기하였는바, 이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거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C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손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77,011,536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증여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은 59,022,958원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59,022,958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59,022,9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022,9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손해행위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가액배상 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나,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 형성판결인 사해행위취소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가액배상 이행의무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성질상 가집행선고가 불가능하다).

판사 박혜정

목 록

경기도 부천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

지붕 5층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60.66 m'

2층 162.2 m'

3층 162.2 m'

4층 162.2 m'

5층 162.2 m'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91.60분의 28.52

